



# ILO

##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 해사노동 고위급 노사정 3자회의

국제노동기구(ILO)는 1월18일부터 23일까지 프랑스 낭트에서 제4차 해사노동기준 관련 고위급 노사정 3자회의를 열고 선원의 기본권과 사회보장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47개국의 정부·선주·선원대표 204명(정부 126명, 선원 37명, 선주 30명, 비정부기구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는 4개 작업반회의로 나뉘어 논의된 내용을 총회에서 재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제1작업반회의에서는 선원거주설비(제3장), 제2작업반회의에서는 선원의 사회보장(제4장), 제3작업반회의에서는 검사증서 및 검사체계(제5장), 제4 작업반회의에서는 통합해사노동협약(안) 제1장, 제2장, 제3장 등 타 작업반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들을 심의했다.

금번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사항을 보면, Code B의 법적 지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Code B는 강행규정이 아니며, 비준국은 Code B를 무시할 수 없고, 항

만국통제관은 Code B의 이행을 검증하지 않느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또 선원의 기본권에 관한 사항에 대해 미국은 본문 제3조의 선원의 기본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등)을 전문(Preamble)으로 이관하자하였으나, 선원 측의 강력한 반발로 노사 및 타국의 견해를 확인한 후 간부회의(Officer)에 회부하고 9월의 예비회의에 제의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규정에 관한 사항과 관련, 제1장 선원의 최저기준에서는 민간직업소개소(manning agency)에 대한 면허제 등의 도입문제가 논의됐으며, 제2장 고용조건의 근로 및 휴식 시간(제2.3조) 조항에 대해서는 선장과 기관장의 근로시간 규정 적용배제 방안이, 그리고 휴가권(제2.4조)의 경우 유급휴가중인 선원을 비상시 recall할 때에는 선원의 동의를 받기로 했다.

제3장 선원거주구역, 오락시설, 식량 및 조달과 관련하여 거주구역 및 오락시설(제3.1조)에 대해서는 협약은 신조선에만 적용되어야 하므로 경과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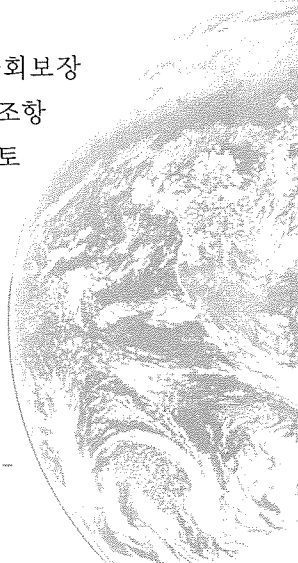
(grandfather clause)을 도입하기로 했다.

그리고 승인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주관청이 적절히 규정하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며, 거주실 천정 높이로서 종래 198cm를 208cm로 강화하는 제안이 되어 있으나, [198]과 [208] 중에서 좀더 검토후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침실면적에 관한 사항은 견해가 갈려 차기회의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으며, 침실마다 분리된 개인위생설비를 비치한다는 규정은 소형선 또는 여객선에는 적용이 불합리한 경우가 있어 동 규정을 삭제하기로 결정하는 한편, 식당은 원칙적으로 2개소로 하되 주관청이 선박의 크기, 선원의 수 등을 고려하여 1개의 식당을 설치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제4장 건강보호, 의료관리, 복지 및 사회보호규정의 선내 및 육상 의료관리(제4.1조) 조항은 '필수직' 무료 치과진료에 대한 제안이 있어 향후 논의가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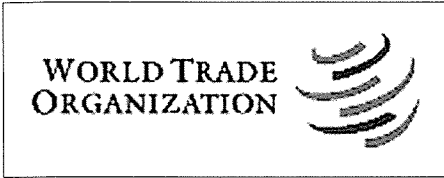
특히, 사회보장(제4.5조) 조항의 주요 검토 내용은 △ 장기적인(long term-basis) 사



회보험에 관한 책임자 △선원의 사회보험에 있어 기국(Flag State)의 역할 △선원이 사회보험에 의한 보상의 보증방법 △선

원의 사회보험에 관한 9개 항목 (branches)에 관한 규정방법(의료, 질병급여, 실업급여, 노령급여, 직무상상해급여, 가족급여,

출산급여, 장애급여, 유족급여) 등이다.



# WTO

## World Trade Organization

### WTO DDA 해운서비스 협상

2004년도 WTO DDA 해운서비스협상에서는 이해관계국 18개 국가와 양자 협상을 통해 해운산업의 규제 폐지 또는 완화방안에 대한 협상을 추진된다.

이번 협상분야는 국제해운, 해운보조, 항만서비스, 복합운송분야에서 내국민대우, 최혜국 내국민 대우 원칙을 제한하는 것을 폐지하고 해운산업의 지원제도 폐지 또는 개선 등을 아래와 같이 2004년도에 5회(3월, 5월, 7월, 9월, 11월)에 걸쳐 제네바에서 협상을 하게된다.

우리나라의 협상 대응방안은 국적선사들의 영업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대만·중국·인도와 중남미 해운

시장의 개방에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협상을 전개하는 것이다.

특히, 한국선주협회는 대만과 일·대만항로 개방과 대만전력공사 입찰시 한국국적선 입찰

제한 폐지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인도와는 조세부담이 없도록 한 인도간 해운회담을 통해 유도할 계획이다.

### < 주요 국가의 폐지대상 규제 >

국 가	해운·항만관련 주요규제	요구사항
미 국	○화물유보제도 - 군수물자 및 알라스카산 원유 100% - 대외지원 농산물 75%	폐지
중 국	○쌍무협정을 통한 시장접근 제한 ○외국선사의 현지법인 및 영업사무소의 설립규제 ○운임 및 해운거래신고 의무부과	폐지 또는 개선
일 본	○항만이용시 항만운송협의회와 사전 협의제	폐지
인 도	○화물유보제도 - 정기선사가 담당하는 화물의 40% - 원유 및 기초적인 원유부산물 100% ○Export CIF/Import FOB 정책 ○외국기업의 해운대리점 서비스에 대한 제한	폐지 또는 개선
대 만	○일·대만 항로의 한국국적선사 시장접근 제한 ○대만전력공사 등 국영기업 수송 입찰에 대한 한국적 선사 참여 제한	*
멕시코	○화물유보제도 - 일반화물 50%, 벌크화물 50%까지 국적선으로 운송	폐지
브라질	○국적선 적취제도 - 정부물자 수송시 국적으로 국적선 이용 불가시 협정을 맺고 있는 국가선박으로 운송가능	*